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42
----------	-----

2023. 10. 13.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9. 27. 노애자 의원 대표발의(11명 공동발의)

나. 상정의결

- 제31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2023. 10. 13.)

“ 원안가결 ”

2. 제안이유(제안설명 : 대표발의자 노애자 의원)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으며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는바, 장수노인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의 장수를 기원함은 물론 경로효친 문화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나. 장수축하금 지급 대상 및 지급 방법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부터 안 제7조까지)

다. 장수축하금 지급 제외 및 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및 제9조)

4. 관련근거 및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논의 필요

다. 입법예고: 해당 없음.

5.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이문성)

1 조례안의 취지

- 조례안은 관내 거주하는 노인의 노후생활 안정과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지역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100세를 맞이하는 노인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갖고 있음.

2 구체적인 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본 조례안 제1조(목적)은 100세를 맞이하는 노인에 대한 장수축하금 지급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하는 취지를 밝히고 있으며,
- 안 제2조에서는 “주민등록상 100세를 맞이하는 사람을”을 “장수노인”으로 하고 “장수축하금”대한 용어를 명확히 정의내리고 있음.

나. 지원사업(안 제3조부터 안 제6조)

- “장수축하금의 지급”을 명시한 안 제3조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수노인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지급대상”과 관련한 안 제4조는 강남구 관내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형식적 요건)하고 거주(실질적 요건)하는 장수노인으로 장수축하금 지원사업의 대상자로 한정하였음.
 - － 지원 대상 요건에 부합하는 (2024년 1월 기준 예상) 강남구 관내 장수노인은 133명으로 예측됨.
 - － 금번 조례안의 부칙에 따라 한시적으로 2024년도에 한하여 장수노인 전

원에 대해 장수축하금이 지급되며, 2025년부터는 당해연도 100세 장수노인(약 30~40명)이 혜택을 받게 됨.

- “지급액”을 규정한 안 제5조는 장수축하금을 해당 장수노인에게 한 차례만 지급하며 지급액은 100만원으로 확정 명시하였고, 안 제6조부터는 장수축하금 지급 관련한 행정절차 등을 규정하였음.
- 집행부는 2024년 장수축하금 홍보 및 안내를 위한 장수축하카드 제작·발송(700천원) 및 축하금(1억4천만원) 지급을 위한 예산 편성(140,700천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참조로 “장수축하금” 사업 도입을 위한 사전절차로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협의절차”이행이 필요한 바, 이와 관련한 협의가 현재(2023년 10월 4일 기준) 진행되고 있음.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와의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장수축하금 제도에 대한 논의

- 2021년 기준으로 통계청 “생명표”에 따르면 한국의 기대수명은 83.6세(남성 80.6세, 여성 86.6)이며, 기대 수명 이상으로 생존하는 노인도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함.
- 전체 인구에서 8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0.8%에서 2022년 1.9%로 1.1% 늘어난 바, 2023년 1월 기준 85세 이상 한국의 노인인구는 960,474명이고, 그 중 100세 이상은 7,911명임.
- 장수노인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로는 “장수수당”과 “장수축하금”이 있는 바, 장수수당은 정기적인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수당)이고 장수축하금은 일시금을 드리는 방식으로 구분됨.
- 다만 2014년 7월 기초연금이 시행된 뒤 중앙정부는 2015년 1월에 장수수

당 등 기초연금 유사 수당 신설을 자제하고 폐지하도록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권고를 한 바, 이에 따라 장수수당을 지급하던 지방자치단체의 상당수가 조례를 폐지하거나 지급 대상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음.¹⁾

- 장수축하금에 대해서도 일부 언론에서는 ① 세금으로 축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타당한지와 ② (일회성 축하금이 아닌) 노인문제에 대한 보다 진지한 접근과 고민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²⁾³⁾

4 결론

- 본 조례안은 100세 노인의 장수를 축하하기 위해 장수축하금을 지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는 바, 장수축하금과 관련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장수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또는 장수노인 지원 조례 등 다양한 명칭의 독립된 조례를 제정하거나 노인복지증진 조례 등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같은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참조할 필요가 있음.
- 다만 100세 노인의 장수를 축하하고자 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예산상 집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그 제정 취지에 공감은 하지만, ① 장수축하금이 일회성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체계적이거나 지속적이지 못하다는 지적과 ② 주민의 납세로 조성한 세금으로 축하금을 지급함이 타당한지에 대한 일부 언론의 문제 제기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 있다고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없음”

1) 김민수, ‘장수 노인에 대한 조례: 복지대상의 세분화’, 나라살림연구소, 2023.02.28.

2) 현철하 기자, ‘금산군, 장수축하금 지급 중단’, 투데이 忠南, 2016.10.26

3) 고귀한 기자, ‘“111세 축하드려요” 광주 남구: ‘500만원 천세축하금’ 지급에 의견 분분’, 2023.07.06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사항 : “없음”

붙임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노애자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42
----------	-----

발의연월일: 2023. 9. 27.

발 의 자: 노애자·김영권·김광심·

김현정·이향숙·안지연·

우종혁·이동호·강을석·

김진경·황영각 의원

(이상11인)

1. 제안이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으며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는바, 장수노인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의 장수를 기원함은 물론 경로효친 문화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나. 장수축하금 지급 대상 및 지급 방법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부터 안 제7조까지)

다. 장수축하금 지급 제외 및 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및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 논의 필요

다. 입법예고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상 나이가 100세인 사람을 말한다.
2. “장수축하금”이란 노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과 장수를 기원하기 위하여 장수노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제3조(장수축하금의 지급)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수노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수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급 대상) 장수축하금의 지급 대상은 장수축하금의 지급일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수노인으로 한다.

제5조(지급액) 장수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지급하며, 지급액은 100만원으로 한다.

제6조(지급 신청) ① 장수축하금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달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장수축하금 지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동 불편 등의 사유로 장수노인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장수노인의 보호자(「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가 장수축하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장수축하금 지급 신청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 절차 및 지급 방법)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장수축하금 지급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초본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장수축하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장수축하금은 장수축하금 지급 신청을 받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장수노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8조(지급 제외) 구청장은 장수노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장수축하금 지급일 기준으로 장수노인이 사망하거나 전출 또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장수노인이 장수축하금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9조(환수 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수축하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수축하금을 받은 경우

제10조(대장 관리) 구청장은 장수축하금 지급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장수축하금 지급 대상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신청 안내) ① 구청장은 장수축하금의 지급 대상, 지급 신청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안내·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인의 장수를 기원하고 축하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상 100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축하 서신과 함께 장수축하금 신청 안내문을 송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특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100세 이상인 사람에게도 장수축하금을 지급한다. 다만, 2024년 12월 31일 까지 장수축하금을 신청한 경우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장수축하금 지급 신청서

지 급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성별)	
	연락처	주소	
지급 계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축하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장수축하금 신청을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및 제42조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초본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지급대상자 (서명 또는 날인)

장수축하금 지급 신청 위임장

지 급 대상자 (위임자)	성명	생년월일(성별)
	연락처	주소

대리인 (수임자)	성명	생년월일(성별)
	연락처	주소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위임 사유

위임자(본인)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축하금 지급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 수임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장수축하금 지급 대상 관리대장

[illegible]